

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의회 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18
----------	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9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2019년 12월 수립된 『2028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』에 의거, 평창읍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수립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계획(안)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 : 다시 도약하는 평창읍, 도시브랜딩 프로젝트 Happy!! 하리

나. 사업위치 : 평창읍 하리 58-51번지 일원

다. 면적 : 140,696㎡

라. 사업비 : 179.83억원(국비 105, 군비 74.33, 민간 0.5)

마. 사업기간 : 2023년 ~ 2026년

바. 사업요약(H/W)

(단위 : 억원)

구분	단위사업	세부사업	사업비
		합계	179.83
마중물사업	A. 함께하리 플랫폼 조성 및 운영	A-1 함께하리 플랫폼 조성	147.26
	B 도전하리 창업베이스캠프 조성 및 운영	B-1 도전하리 창업베이스캠프 조성	7.38
	C. 변신하리 평창형 경관개선	C-1 평창놀거리 조성	11.50
		C-2 평창 정주환경개선	13.69

※마중물 사업 추진 S/W 예산(23.33억원)은 별도

3. 그간 추진사항

-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: 2019. 5.
- 2028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: 2019. 12. 27.
- 평창읍 도시재생대학 운영(1기) : 2020. 2. 18. ~ 7. 14.
-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채용(충원) : 2020. 10. 12.
※'21.6월 현재 3명 근무(센터장 1, 팀장 1, 팀원 1)
- 평창읍 도시재생대학 운영(2기) : 2021. 3월(상반기) / 10월(하반기)
- 평창읍 도시재생대학 운영(3기) : 2022. 7. 6. ~ 8. 24.
- 평창읍 도시재생 추진단 회의 : 2022. 8. 16.
- 평창읍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회의 : 2022. 8. 29.
-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 공청회 : 2022. 9. 2.

4. 향후 일정

-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접수 : 2022. 9. 21.
-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서면평가 : 2022. 9. 22. ~ 10. 7.
-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현장실사 : 2022. 10. 17. ~ 19. ※미정
-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발표평가 : 2022. 11. 3.
-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선정발표 : 2022. 12.

관계법령 발취

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20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) 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,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